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4
----------	------

2018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2월 13일, 박마루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2월 22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마루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컨설팅, 기술 및 자금 등의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서울시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6조의3제2항 중 제1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비용추계서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전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례 시행일을 조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84
----------	------------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22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전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례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전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의3제2항)
-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 2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